

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3706호
- 나. 제 안 자 : 서울특별시장
- 다. 제안일자 : 2026년 5월 26일
- 라. 회부일자 : 2026년 5월 27일

2. 제안이유

-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」 개정으로 공립 박물관·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 사무가 시·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의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사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공립 박물관·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(안 제3조의3)
- 나.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공립 박물관·

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.(안 제6조제3항제3호)

다. 문구 정비 등 기타 경미한 사항 수정함.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및 동 시행령

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이윤희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¹⁾ 및 동 시행령²⁾에서 위임하고 있는 공립 박물관·미술관의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서울특별시장에 의해 제안되었음.

나. 공립 박물관·미술관의 설립을 위한 사전 절차의 필요성

-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은 지난 2025년 1월 31일 개정을 통해,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·미술관을 설립하려는

1) 제12조의3(공립 박물관·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) ① 제12조의2에 따른 설립 협의를 마친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는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·미술관의 설립·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적으로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검토를 하여야 한다. …

2) 제7조의5(공립 박물관·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 또는 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립·운영 계획서를 첨부하여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. …

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,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체적으로 설립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위임한 바 있음.

동 개정안은 위와 같은 상위법령의 위임 취지에 따라 관련 조문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됨.

다. 개정안의 주요 내용

(1) 상위법령의 위임사항 규정(안 제3조의3 및 제6조)

- 동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공립 박물관·미술관의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하고자 함.
- 안 제3조의3에서는 공립 박물관·미술관의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의 진행 시기와 접수 일자 및 평가 방식을 규정하고 있음.

진행 시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사전평가 시기와 동일하게 반기별 실시로 반영하였으며, 평가 방식은 서면심사·현장실사·종합심사를 병행하여 설립타당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적절히 규정한 것으로 보여짐.

- 안 제6조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에, 공립 박물관·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음.

공립 박물관·미술관의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는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인바, 이를 기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에 포함시키는 것은 위원회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.

- 동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령 체계상의 이견은 없으나, 시행 과정에서 상위법의 개정 취지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 제고가 구현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.

< 관련 신.구조문 대비표 >

현행	개정안
제3조의2(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 수립·시행) ① (생략)	제3조의2(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 수립·시행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②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<u>그밖</u> 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	4. <u>그 밖</u> ----- -----
<u><신설></u>	제3조의3(공립 박물관·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)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3에 따른 공립 박물관·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를 반기별로 실시한다. ② 시장은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」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·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신청을 상반기는 2월 말일까지, 하반기는 8월 말일까지 접수한다.

현행	개정안
제5조(지원경비의 관리) ① 제4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은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및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·관리하여야 한다.	③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는 서면심사, 현장실사 및 종합심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.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지원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박물관 및 미술관 등에 대하여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및 시행규칙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.	제5조(지원경비의 관리) ① ----- ----- ----- -- 같은 조례 시행규칙----- -----.
③ (생략)	② ----- ----- ----- ----- 같은 조례 시행규칙----- -----.
제6조(박물관 및 미술관진흥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·②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	제6조(박물관 및 미술관진흥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1. 2. (생략)	③ ----- -----.
<신설>	1. 2. (현행과 같음)
3. 4. (생략)	3. 법 제12조의3에 따른 공립 박물관·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에 관한 사항
④ (생략)	4. 5. (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)
	④ (현행과 같음)

(2) 띄어쓰기 등 자구 수정(안 제3조의2 및 제5조)

- 동 개정안은 제3조의2 및 제5조에서 띄어쓰기 등 어문 규정에 어긋난 부분을 광범위하게 수정하고 있음.

법제처가 발간한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은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반듯한 법령을 마련하기 위하여, <한글 맞춤법>, <표준어 규정> 및 <외래어 표기법> 등 어문 규정에 맞게 입안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.

동 개정안에는 자구 보완 사항이 다수 확인되는바, 향후 조례안 입안 과정에서 본문의 관련 기준 준수 여부를 시 법무담당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정확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.

전문위원

임창균(2180-8113)

입법조사관

김예영(2180-8114)